

심 사 보 고

1997. 9. 26
교육사회위원회

1. 심 사 경 과

- 가. 제안일자 및 제안자 : 1997년 9월 12일, 충청북도지사 제출
- 나. 회부일자 : 1997년 9월 12일
- 다. 상정일자 : 제141회입사회 제4차교육사회위원회 (1997. 9.26)상정
심사의결

2. 제안설명요지 (사회복지국장 장상자)

가. 제안이유

-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
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과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려는 것임

나. 주요골자

- 기금은 충청북도의 출연금 기금운용으로 생기는 수익금, 기타 수
익금으로 조성함 (안 4조)
- 기금운용은 당해연도 적립기금의 이자수익금으로 운용하되 다음 목
적에 사용함 (안 10, 11조)
 - 등록된 장애인의 보호·육성
 - 장애인 복지증진 및 장애인단체의 지원 등

- 기금의 운영관리를 위한 기금관리위원회 구성 (안 5조)
- 위원장 포함 12인 이내 (위원장 : 행정부지사)
- 기금관리를 위한 기금운용관과 기금출납원 지정 운영 (안 11조)
- 매회계년도마다 기금운용계획을 수립하여 도의회에 제출 (안 12조)

3. 검토보고요지 (전문위원 김영만)

- 장애인복지법 제5조에 의한 장애인의 복지증진과 장애인단체의 보호·육성을 위한 기금의 조성 및 운용관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는 것으로 타당하다고 사료됨

4. 질의및답변요지 : 생략

5. 토론요지 : 없음

6. 심사결과 : 원안가결

7. 소수 의견 요지 : 없음

8. 기타 필요한 사항 : 없음

9. 첨부서류

- 충청북도장애인복지기금설치및운용조례안